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9.(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1. 회부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26)

2. 제안이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인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마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존 조례의 명칭 변경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내용(안 제3조~제4조)

-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9조)
- 가사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0~제13조)
 - 가사와 양육부담이 큰 “만 8세 이하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중인 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교육 및 홍보, 표창, 중복지원 금지 신설(안 제14조~제17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정의)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 2021.10.14.~11.3.(제출된 의견 없음)
- 규제사항 유무 : 규제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가속화 되는 저출산 현상을 막기 위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출산축하금 지급”이라는 일시적인 출산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저소득 다자녀가정에 가사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육 지원까지 포함한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출산축하금 지급”에서 가사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출산 및 양육지원”으로 기존 조례 명칭을 변경하고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출산축하금’과 ‘가사서비스’에 대한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출산 및 양육지원 시행계획 수립과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기존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출산축하금에 대한 신청에서부터 지급관리까지 과정을 새롭게 정리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출산축하금 지급기준에 대한 변동은 없음

〈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 현황 〉

(단위 : 명, 천원)

구 분		계	첫째 (1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
2020년	인원	1,913	1,201	620	84	4	4
	금액	546,100	120,100	310,000	84,000	12,000	20,000
2021년 (9월 기준)	인원	1,423	883	478	54	8	0
	금액	429,800	88,300	263,500	54,000	24,000	0

☞ 참고로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과 별도로 보건복지부의 신규 사업으로 20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동에게 첫 만남 이용권(200만원)을 지급예정이며 이는 출생아동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제16조에 의거 출산축하금과 중복으로 지급은 불가하며

☞ 본 개정조례에 의한 출산축하금 지급은 내년에는 2021년 12월31까지 출생한 아동까지만 출산축하금이 지급예정이며 이후에는 첫 만남 이용권과 관련한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개정사항 시행 등에 맞춰서 출산축하금 지급 관련 조항의 정비를 결정해야 할 것임

-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는 가사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규정들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0조는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서 제출에 대한 규정을

- 안 제11조는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자격요건에 대한 규정으로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의 만8세 이하 자녀 3명을 양육하는 6개월 이상 거주 마포구민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 2021년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구분(2021년)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100%)		4,876,000원	5,757,000원	6,629,000원	7,497,000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168,195원	200,355원	228,860원	257,849원
	지역	171,434원	212,560원	248,783원	284,709원
	혼합	170,536원	203,558원	233,144원	263,923원

- 안 제12조는 가사서비스 지원내용으로 1일 4시간, 주1회, 월 최대 4회까지 지원하며 가사서비스는 청소 및 세탁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며 이용자의 자기부담금은 10%로 ‘세 자녀 이상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신청서’에 명시 되어 있음

- 안 제13조는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 안 제16조는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사유의 중복지원 금지와 등록장애인 등에 대한 중복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출산 축하금 지급이라는 단편적인 정책과 더불어 자녀 양육부담이라는 개인적인 영역의 가사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유아를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에 가사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제공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함이며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다소나마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참고 자료

1. 관련법규
2.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14. 3. 18.] [법률 제12449호, 2014. 3. 18., 일부개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1. 10. 28.] [법률 제18333호, 2021. 7. 27., 일부개정]

제32조(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0. 6. 11.] [법률 제16761호, 2019. 12. 10.,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조례 제11조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셋째아 이상 가정의 가사서비스지원

나. 비용추계기간 : 2022. 1. ~ 2026. 12.(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 차 별 (5개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합계
소요예산	110,300	132,000	142,000	152,000	162,000	698,300

4.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세출 예산 편성

5. 덧붙이는 의견

-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이애련(☎ 3153-892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9.(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1. 회부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
- 제안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 (의안번호 : 21-115)

2. 제안이유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고 관리·감독에 대한 사항 등 근거규정을 신설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안 제47조~제48조 신설
 - 여성센터의 운영을 위한 설치 목적 및 역할 등을 명시
- 안 제49조~제50조 신설
 -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 운영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여성 시설의 설치·운영 등)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입법예고 : '21.09.30 ~ '21.10.27(제출의견 없음)
- 규제사항 유무 : 규제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관리 등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 개정조례안 내용들을 살펴보면
 - 조문 제47조와 제48조를 신설하여 마포구 여성센터 설치·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안정적인 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에서 수행할 역할들을 열거하고 있으며
 - 조문 제49조는 여성센터 위탁과 위탁기간(3년) 및 수탁 운영자 선정방법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제50조에는 위탁기관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여성센터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이며 신설되는 조문들은 상위 법령과 조례 등에 근거한 적합한 개정이라 사료됨

- 이와 같이 본 조례개정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마포구 여성 센터의 설치와 운영에는 별첨 비용추계서와 같이 재정적으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여성센터의 설치·운영으로 우리 구 여성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센터 운영에 각별한 관심으로 가져야 할 것임.

※ 참고 자료

- 1. 관련 법규**
- 2. 비용추계서**

[관련법규]

양성평등 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 2020. 4. 24.]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1300호, 2020. 4. 24., 일부개정]

제31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9.24>

[비용추계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추계 요약

가.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장 센터설치 및 운영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31조(여성시설의 설치·운영)

나. 구청장방침 현치매안심센터를 활용한 여성센터 설치 운영계획(안)

다. 비용추계기간 : 2021. 1. ~ 2025. 12. (60개월)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이후 계속)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시비 보조금	-	-	-	-	-	-
	구비 보조금	43,600	1,706,700	330,890	335,853	340,890	2,757,933
	소계(b)	43,600	1,706,700	330,890	335,853	340,890	2,757,933
□ 총 비용(a-b)		43,600	1,706,700	330,890	335,853	340,890	2,757,933

※ 인건비 상승분(연도별 소요예산의 1.5%) 반영

※ 2022년도 여성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비 1,380,700천원 포함

4. 재원조달 방안

가. 마포구 구비 전액 지원

5. 덧붙이는 의견

가. 비용추계의 세출은 차후 사업내역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복지교육국 여성가족과 김미진 (☎ 3153-892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9.(월)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1. 검토안건

- 안전명 :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
- 제출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의안번호 : 21-116)

3. 제출이유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운영을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 1) 위탁기간 : 3년
- 2)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3)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4) 소요예산 : 321,000천원(민간위탁금)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일반운영비	신규 물품취득비	
총 계	321,000	150,000	32,000	94,000	45,000

※ 여성센터 리모델링 공사 관련 소요예산 : 2,023.6백만원

- 설계용역비 : 43.6백만원(2021년 추경)

- 리모델링 공사비 : 1,980.0백만원(2022년 본예산)

5) 위탁시설 개요

시설명(가칭)	소재지	규 모	개관예정
마포구 여성센터	대흥로 122	624.2㎡ 지상4/지하1	2022년 6월

위 치 도



다. 세부추진일정

- 민간위탁운영체 공개모집 : 2022.3.~ 4.
- 리모델링 공사 등 환경조성 추진 : 2022.1.~ 6.
- 마포구 여성센터 개관 : 2022.6.

5. 관계법령

- 가.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 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제47조(사무의 위탁)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성별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마포구 여성센터의 운영을 역량 있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마포구의회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마포구 여성센터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다양한 젠더폭력 대응 강화 등을 위해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에 근거하여 신규 설치되는 시설이며, 마포구 여성센터에서 수행하는 사무들은 같은 조례 제47조 “사무의 위탁”의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들로 마포구 여성센터의 운영사무 또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해당된다 생각됨.

- 참고로 본 동의안과 별도로 금번 회기에 마포구 여성센터를 효과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마포구 여성센터의 설치 및 위탁관리 등에 대한 세부 근거 규정들이 신설 중에 있음.
-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마포구 여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이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기간은 3년에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으로 본 동의안은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으로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위와 같이 마포구 여성센터가 관련법령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등이 이루어지고 양성평등 정책 등 관련사무가 추진되겠지만 센터의 설치와 사업 추진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마포구 여성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후에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용자 등이 만족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참 고 자 료 : 관 련 법 규**

[관련법규]

양성평등기본법

제45조(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양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1조(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 범위와 위탁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51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11. 29.(월)

검 토 안 건	발 의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춘주)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박춘주)

1. 검토안건

- 안전명 : 구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여성가족과)
- 제출일 : 2021. 11. 16.
- 회부일 : 2021. 11. 17.(의안번호 : 21-111)

3. 제출이유

수요 대비 보육시설이 없는 도화동 현대홈타운 내 구립어린이 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육사각지대를 해소 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구립 현대홈타운어린이집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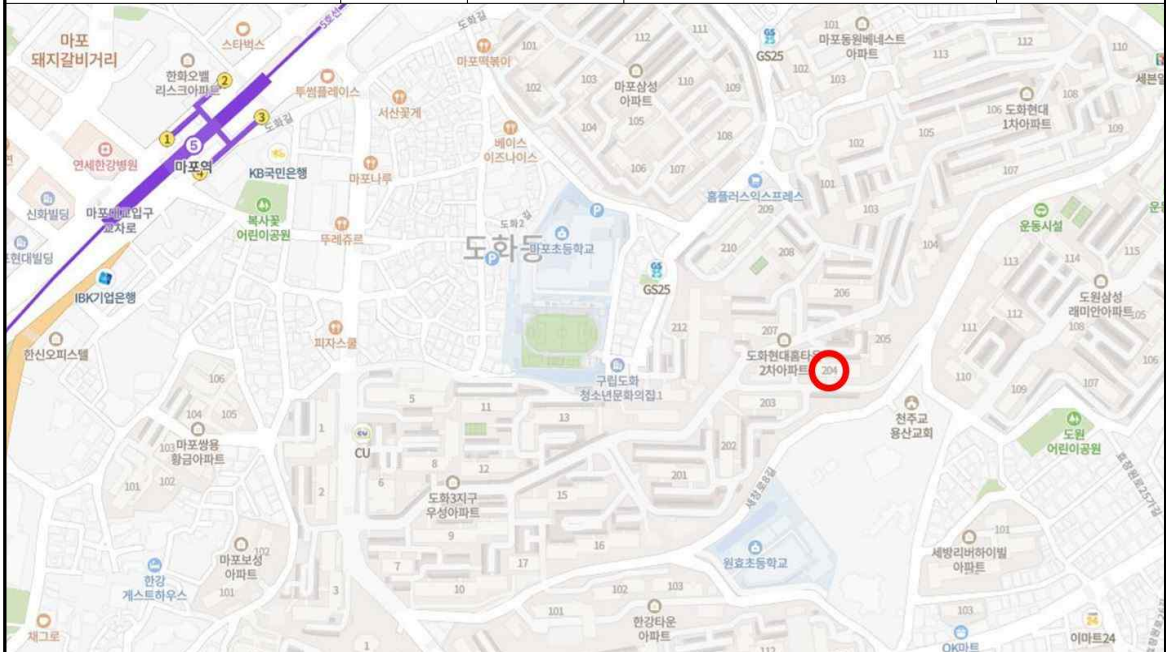
- 1) 위탁기간 : 개원일로부터 5년
- 2) 수탁자 선정방식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3) 위탁사무의 내용 및 범위 : 구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 (가칭)현대홈타운>

위 치	정 원	규 모	소요예산(천원)	개원예정일
새창로8길 72, 현대홈타운 204-101	20	113.25m ²	1,805,722 - 국비 154,904(8.6%) - 시비 845,096(46.8%) - 기금 742,722(41.1%) - 구비 63,000(3.5%)	2022.5.1.



다. 세부추진일정

- 구의회 위탁운영 동의 : 2021.12.
-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탁운영체선정) : 2022.02.
- 구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체결 : 2022.03.
- 구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매 : 2022.03~04.
- 구립어린이집 개원 : 2022.05.

5. 관계법령

- 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제21조(수탁자 모집), 제22조(위탁기간)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가칭)현대홈타운 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어린이집 운영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무에 해당되며
-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제1항에는 구청장은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원일로부터 5년으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통상적인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무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경쟁모집을 하고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도록 하여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자료 : 관련법규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구립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